
Policy and Law Report _Vol.18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4.19.~4.25.) -

April 26,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4/19~4/25)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보건 복지부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 발표 - 보건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4대 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보건복지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보건의료 기술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발표함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79.4%(’22년 기준)에서 82.0%(’27년)까지 향상시키고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또 바이오헬스 수출을 242억 달러(’22년 기준)에서 447억 달러(’27년)까지 확대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 심뇌·응급 등 필수의료 투자, ▷ 암·치매 등 미극복 질환 대응 기술 개발, ▷ 환자 맞춤형 희귀난치질환 치료기술 개발 ②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 감염병 백신·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확보, ▷ 감염병·재난 대응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 ▷ 혁신적 보건의료 R&D 체계 마련 ③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 데이터·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 의약품·의료 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첨단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개선 ④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 위한 R&D 경쟁력 강화, ▷ 기술 보유 기업의 사업화 촉진, ▷ 규제 합리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table><tr><td>비전</td><td colspan="4">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td></tr><tr><td>목표</td><td colspan="4">① 보건의료기술 수준 향상 [선도국 대비 ’22년 79.4% → ’27년 82.0%] ② 보건안보 위기 시, 100일 내 백신·치료제 대응시스템 구축 ③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22년 242억 달러 → ’27년 447억 달러]</td></tr><tr><td>추진 전략</td><td>I.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투자</td><td>II.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든든한 보건안보 확립</td><td>III. 바이오 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td><td>IV.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조성</td></tr><tr><td>중점 과제</td><td>① 필수의료 정책지원 기술 개발 ② 주요 질환의 조기진단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 ③ 비용효과적인 환자 중심 보건의료기술 개발 ④ 국민 생활 건강증진 연구 강화</td><td>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② 선제적 감염병·재난 대응체계 구축</td><td>①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②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③ 원천기술 기반 첨단재생의료 실용화 촉진 ④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⑤ 한의·피부·치의 건강기술 연구개발</td><td>① 보건의료 R&D 혁신생태계 활성화 ②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혁신 환경 조성 ③ 혁신 생태계 핵심전문인력 양성</td></tr></table>	비전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				목표	① 보건의료기술 수준 향상 [선도국 대비 ’22년 79.4% → ’27년 82.0%] ② 보건안보 위기 시, 100일 내 백신·치료제 대응시스템 구축 ③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22년 242억 달러 → ’27년 447억 달러]				추진 전략	I.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투자	II.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든든한 보건안보 확립	III. 바이오 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IV.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조성	중점 과제	① 필수의료 정책지원 기술 개발 ② 주요 질환의 조기진단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 ③ 비용효과적인 환자 중심 보건의료기술 개발 ④ 국민 생활 건강증진 연구 강화	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② 선제적 감염병·재난 대응체계 구축	①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②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③ 원천기술 기반 첨단재생의료 실용화 촉진 ④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⑤ 한의·피부·치의 건강기술 연구개발	① 보건의료 R&D 혁신생태계 활성화 ②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혁신 환경 조성 ③ 혁신 생태계 핵심전문인력 양성	2023-04-19
	비전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																				
목표	① 보건의료기술 수준 향상 [선도국 대비 ’22년 79.4% → ’27년 82.0%] ② 보건안보 위기 시, 100일 내 백신·치료제 대응시스템 구축 ③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22년 242억 달러 → ’27년 447억 달러]																					
추진 전략	I.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투자	II.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든든한 보건안보 확립	III. 바이오 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IV.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조성																		
중점 과제	① 필수의료 정책지원 기술 개발 ② 주요 질환의 조기진단을 위한 혁신기술 확보 ③ 비용효과적인 환자 중심 보건의료기술 개발 ④ 국민 생활 건강증진 연구 강화	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② 선제적 감염병·재난 대응체계 구축	①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②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③ 원천기술 기반 첨단재생의료 실용화 촉진 ④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⑤ 한의·피부·치의 건강기술 연구개발	① 보건의료 R&D 혁신생태계 활성화 ②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혁신 환경 조성 ③ 혁신 생태계 핵심전문인력 양성																		

부처	내용	일시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함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세계(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는 위축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벤처투자자 기금(펀드)결성 모두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이며,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기금(펀드) 결성액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3%, 78.6% 줄어드는 등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임 *전년 동기 대비 벤처투자 증감률(%): ('22.3Q) △38.6 → (4Q) △43.9 → ('23.1Q) △60.3 전년 동기 대비 기금(펀드)결성 증감률(%): ('22.3Q) +3.3 → (4Q) △13.0 → ('23.1Q) △78.6 이러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인수합병(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합동 전담조직(TF)를 구성하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10.5조원 추가 지원 - 정책금융 2.2조원, 정책기금(펀드) 3.6조원, 기술개발(R&D) 4.7조원 등 공급 ②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 - 은행의 벤처기금(펀드) 출자 한도 2배 확대 (자기자본의 0.5% → 1%) -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 벤처기금(펀드)의 신주투자 의무(現 40% 이상) 폐지, 인수합병(M&A) 벤처기금(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現 최대 20%) 완화 -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토록 규제 완화 ③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전문가 범위를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 - 지분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하도록 복수의결권 도입 -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2027년인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	2023-04-20

부처	내용	일시												
금융위원회	•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경기둔화 전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핀테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됨 간담회는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핀테크 글로벌 진출 우수사례 공유, 핀테크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건의과제 및 의견 수렴 순서로 진행됨 <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정책 주요 추진사항 > 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 제공 (법률, 회계/세무, 특허, 마케팅 등) ② 해외국가별 정책, 시장동향, 경쟁도 등 정보를 담은 「핀테크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개발 *베트남, 인도네시아(완료), 일본, 싱가포르(제공 예정) → 지속적으로 고도화 실시 ③ 초기 진출 기업을 위한 핀테크 특화 통·번역 서비스 제공 (바이어 상담, 행사지원, 계약서 검토 등) ④ 금융회사 핀테크랩(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 K-Startup 센터 등 해외거점 공간 활용 지원 ⑤ 해외 기업·기관 파트너십 확대 및 해외 투자자(VC, AC 등), 핀테크 인력 정보 제공 ⑥ 대국민 핀테크 체험박람회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3」 개최를 통한 투자유치 및 홍보기회 제공 ⑦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5천억원→1조원) 및 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年 2천억원 규모)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글로벌 진출 지원내용 > <table><tr><th>금융기관</th><th>주요 지원내용</th></tr><tr><td>KB금융</td><td>해외진출 핀테크의 정착을 위한 사무공간·법인설립·자문 비즈니스 레퍼런스 확보 지원,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및 직·간접 투자확대 등</td></tr><tr><td>신한금융</td><td>베트남, 일본 등 해외 핀테크랩을 활용한 현지진출 및 핀테크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 지원, 현지 데모데이 개최, 전문인력 채용지원 등</td></tr><tr><td>우리금융</td><td>베트남을 중심으로 현지법인, 핀테크랩을 연계하여 데모데이 개최, 투자·특허·법률·회계 등 컨설팅 제공, 현지 비대면 서비스 공동제공 등</td></tr><tr><td>하나금융</td><td>국외 네트워크(25개국 187개소)를 활용한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금융지원 강화, FDI 부서활용 해외진출 컨설팅 제공, 英 진출 사업설명회 개최 등</td></tr><tr><td>NH농협은행</td><td>핀테크랩을 통해 법률자문, 해외기관연계 등 글로벌 진출 멘토링 지원, 동남아 핀테크 투자펀드와 연계하여 협업기회 제공 등</td></tr></table>	금융기관	주요 지원내용	KB금융	해외진출 핀테크의 정착을 위한 사무공간·법인설립·자문 비즈니스 레퍼런스 확보 지원,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및 직·간접 투자확대 등	신한금융	베트남, 일본 등 해외 핀테크랩을 활용한 현지진출 및 핀테크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 지원, 현지 데모데이 개최, 전문인력 채용지원 등	우리금융	베트남을 중심으로 현지법인, 핀테크랩을 연계하여 데모데이 개최, 투자·특허·법률·회계 등 컨설팅 제공, 현지 비대면 서비스 공동제공 등	하나금융	국외 네트워크(25개국 187개소)를 활용한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금융지원 강화, FDI 부서활용 해외진출 컨설팅 제공, 英 진출 사업설명회 개최 등	NH농협은행	핀테크랩을 통해 법률자문, 해외기관연계 등 글로벌 진출 멘토링 지원, 동남아 핀테크 투자펀드와 연계하여 협업기회 제공 등	2023-04-24
금융기관	주요 지원내용													
KB금융	해외진출 핀테크의 정착을 위한 사무공간·법인설립·자문 비즈니스 레퍼런스 확보 지원,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및 직·간접 투자확대 등													
신한금융	베트남, 일본 등 해외 핀테크랩을 활용한 현지진출 및 핀테크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 지원, 현지 데모데이 개최, 전문인력 채용지원 등													
우리금융	베트남을 중심으로 현지법인, 핀테크랩을 연계하여 데모데이 개최, 투자·특허·법률·회계 등 컨설팅 제공, 현지 비대면 서비스 공동제공 등													
하나금융	국외 네트워크(25개국 187개소)를 활용한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금융지원 강화, FDI 부서활용 해외진출 컨설팅 제공, 英 진출 사업설명회 개최 등													
NH농협은행	핀테크랩을 통해 법률자문, 해외기관연계 등 글로벌 진출 멘토링 지원, 동남아 핀테크 투자펀드와 연계하여 협업기회 제공 등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4.19. 시행)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을 이미 납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재료·용기·포장재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하여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이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서는 안 되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조, 제10조 등)	2023-04-19
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4.24. 시행)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변동이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2 제1호나목,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2023-04-24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 감사기간을 확대하여 감사를 내실화하고, 정부 결산 과정 일정 등을 최소화하여 국회 결산 심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회계감사인 감사기간 확대 (안 제43조제2항) - 회계감사인의 충분한 감사기간 확보를 위해 감사가능 기간을 연장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일정 단축 (안 제4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 결산 과정의 불요불급한 일정 등을 최소화하여 국회 결산 제출일(8.20.) 기준으로 결산일정을 총 21일 단축 ※ 의견 제시기간 : 2023/4/20(목)~5/3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로 제출	2023-04-2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4월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 의견 제시기간 : 2023/4/20(목)~4/21(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2023-04-2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간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 의견 제시기간 : 2023/4/20(목)~4/21(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로 제출	2023-04-20
	•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3년 102조가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여 국가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함 (안 제12조의2제2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4/19(수)~5/29(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로 제출	2023-04-19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을 추가하고자 함. 동시에 외국인투자제도 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필요사항 보완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023-04-1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성장동력·첨단기술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현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 (안 제20조의2제5항제4호 신설) ②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가능 업종으로 회사본부를 추가 (안 제25조제3항제2호 신설) ③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요건 완화 (안 제39조의2제5호 개정) ④ 제도운영상 필요사항 보완 - 현금지원금 지급시점과 관련하여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을 ‘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된 날’로 변경 (안 제20조의3제3항 개정)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세부 절차 및 요건, 임대료 산정·관리 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화 (안 제26조의2제8항 신설) -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신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접수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 (안 제40조제2항제1호 개정) ⑤ 타법 개정사항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 개정으로 조세감면 조건으로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상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조건의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이 불필요하여 삭제 (안 19조제6항제1호나목 개정) - 자본재 검토·확인과 관련하여, 기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7조(수출입승인 물품)에서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으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 (안 38조제1항제3호 개정) -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가 동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 (안 제39조의2제2호 개정) ※ 의견 제시기간 : 2023/4/19(수)~5/31(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노동소송법안(최강욱의원 등 12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사건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가 용이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을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안 제2조) ②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③ 지방노동법원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노동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안 제7조) ④ 노동민사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의 액수는 일반민사소송의 5분의 1로 하고,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및 제15조) ⑤ 지방노동법원은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을 각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안 제24조 및 제25조) ⑥ 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지방노동법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함 (안 제26조 및 제27조) ⑦ 조정위원은 벌칙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에 처벌함 (안 제32조 및 제33조)	2023-04-20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1인)」 최근 사람 얼굴의 골격 분석, 3차원 측정 등을 통하여 얼굴의 특징점을 탐지하고, 탐지한 특징점을 바탕으로 개인을 인식하는 안면인식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편인증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안면인식기술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얻게 되는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안면인식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고, 안면인식정보는 그 특성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인지없이 수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안면인식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정의 및 그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3조의2 신설 등)	2023-04-19
정무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유통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청약, 계약체결, 결제에 이르는 판매행위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자신의 성명, 주소, 상호 등 신원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허가 또는 무등록 업체 등을 알선받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사업자를 알선받고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 결제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현행법상 신원정보 제공의무가 부여된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이 경우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사이버몰 등 온라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온라인사업자중개”로 정의하고, 온라인사업자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며 아울러, 신원정보에 사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등)	2023-04-20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설계·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그런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른바 ‘눈속임 상술’)이 복잡·다양하게 나타나 이용됨으로써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할 의무와 소비자에게 재화 등 구매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며(2개의 작위의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5가지 부작위 의무(소비자에게 1.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2.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 청약으로 유인행위 3.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4.취소·탈퇴·해지를 방해행위 5.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하고, 온라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결제시점에서 소비자에게 그 증액·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증액·전환이 된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 부과 (안 제8조제6항 신설) ② 소비자에게 최초로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에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할 의무 부과 (안 제13조제3항 신설) ③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 신설 등 (안 제21조의2 신설) -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 청약으로 유인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 취소·탈퇴·해지를 방해행위 -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 ④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1조의3 신설)	2023-04-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u>」 현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금액 단위로 주식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 소액투자자의 우량주식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수 있음. 이에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가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 수 있도록,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기업공개(IPO)와 관련하여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공모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과 이로 인한 상장 후 주가의 불안정성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 수요예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활용 중인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와 사전 수요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모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주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인적·물적·전산 설비, 대주주 적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인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금융투자업자가 인가업과 함께 자본·일임업 등 등록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등록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 간이 소요되어 인가 특례의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인가특례와 마찬가지로 등록업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등록에 관한 특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와 마찬가지로 등록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사업계획 요건 및 물적요건과 대주주 요건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안 제21조의2 신설) ② 코너스톤 투자자 및 사전 수요예측을 위해 신뢰성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에 IPO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고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함 (안 제121조의2 신설 및 제174조제1항) ③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를 위한 구분예탁 예외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시 증권사가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분 구분예탁의 예외를 허용함 (안 제309조제3항)	2023-04-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영업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은 포함되어 있지만 농·수산업협동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농협이 2020년부터 판매해온 고금리 금융상품의 약관을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일방 통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 이에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뿐 아니라 농·수산업협동조합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조, 제4조 및 제51조제3항)	2023-04-20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은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등장 이후 이를 거래하는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상장에서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상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함 (안 제2조) ②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치 및 신탁하도록 함 (안 제5조) ③ 가상자산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안 제8조)	2023-04-2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④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거래정보 수집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 제10조) ⑤ 가상자산업자가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에 상장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심사 기준 및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3조) 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안 제14조) ⑦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⑧ 몰수 및 추징과 관련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함 (안 제21조)	
	• 「<u>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u>」 현행법령은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성과 보수의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단기실적주의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히게 되더라도 성과 보수를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고시 규정을 법률에 명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성과 보수체계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안 제22조 등)	2023-04-25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노동조합 등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를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반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 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에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공시를 압박하는 시행령 개정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3항)	2023-04-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용 자산이나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자산이나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런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세제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시설투자액에 대한 공제율이 미비할 뿐 아니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사업장이 소재한 자동차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설계·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법인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수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8 신설 등)	2023-04-2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기술 정보통신 위원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 법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행이 종료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2023-04-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현행법은 백도어를 침해사고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백도어를 활용한 해킹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대응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2023-04-2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1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재판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현행법은 통신자료제출을 받은 이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으며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및 법원이 통신자료제출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출을 받은 사실, 통신자료제출을 받은 일시 등을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83조의2 신설 등)	2023-04-25
행정안전위원회	• 「승강기산업 진흥법안(김용판의원 등 13인)」 우리나라는 1910년 최초 승강기 설치 후 112년만에 세계 7위의 승강기 보유국(80만 대)이자 세계에서 3번째로 매년 많은 승강기가 새롭게 설치(4만여 대)되는 시장 규모 4조원의 승강기 산업 대국에 해당됨 그러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개정(2019. 3.)을 통한 안전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이용자 안전은 크게 제고되었지만, 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승강기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었고 국내 승강기 시장 구조는 약 60% 이상이 외국 기업과 수입 제품에 의존하여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규제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제조·설치·유지관리로 다변화되어 있는 국내 승강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승강기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 및 수출 지향적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승강기 업계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2023-04-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승강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진흥활동 추진 등 국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산업진흥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종국적으로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안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안 제4조 및 제5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 · 추진을 위해 해마다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안 제7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안 제8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금조성, 실용화 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⑥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시회 개최, 참여 지원, 공모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⑦ 이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승강기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조사 · 연구, 국제교류,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및 해외진출 마케팅, 협력회의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11조)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2조)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 (안 제13조) ⑩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안 제14조) ⑪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며, 정부에 건의와 자문을 할 수 있음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를 설치 · 운영함 (안 제18조)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⑬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제15조에 따른 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안 제19조)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 「<u>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및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그런데 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 등급심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등 국민들이 정확히 등급예측을 내리기 어렵고, 영화, 웹툰 등 타 콘텐츠들과의 심의기준이 달라 차별 논란이 있으며,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해 P2E(Play to Earn) 게임 관련 소송 등 불필요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게임산업 분야에 종사하였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심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여부 확인과 확인기준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위원회는 국민들이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기별로 공시하며 문화예술 관련 다른 법령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6조, 제20조의2 및 제21조)	2023-04-24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u>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등 12인)</u>」 현행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소부장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그런데 소부장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양성·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분야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특화단지의 추가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소부장산업 발전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2023-04-24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지 않고 규모를 유지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이 더뎠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의 경우 2021년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9.7% 감소할 때 역으로 226.3% 성장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완성차 기업의 생산설비 확충, 전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비하여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한편, 외국인이 지원금만 수령하고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하거나 2배 이내의 배상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현금지원에 대한 환수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용도에 공장의 기존 시설물 교체를 추가함 (안 제14조의2제1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의 설계·제조를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또는 공장의 기존 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14조의2제1항제6호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현금 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지원금의 2배 이내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2제5항 후단 신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함 (안 제14조의2제5항 각 호 신설)	2023-04-2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보건복지 위원회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화장품제조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화장품제조업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화장품제조업 등록 등을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3 등)	2023-04-2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약사 및 한약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관련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약사 및 한약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약사 및 한약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9조의3 신설)	2023-04-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26조제3호)	2023-04-21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화학사고’는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 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비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법령상 관리체계 부재에도 불구하고 비유해화학물질로 발생한 사고도 ‘화학사고’로 인정되는 등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벌칙 등을 과도하게 적용함으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사고’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한정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3호 및 제35조제2항제26호)	2023-04-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1인)」 현행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면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없다는 사유로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초과근로수당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23-04-2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통상근로자의 범위를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또는 동종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확대함으로써, 비교 대상이 없어 단 시간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 제18조제1항)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4/27(목) 14:00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도서관	4/2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1호 발간 -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입법례	
	4/26(수)	금주의 서평 제625호 발간 - 도시의 생존	
	4/27(목)	「현안, 외국에선?」 제58호 발간 - 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	
예산정책처	4/27(목)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분석」 발간	
입법조사처	4/25(화)	「NARS 입법·정책」 발간 -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분석	
미래연구원	4/25(화) 09:30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 - 저출산 대응 정책: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의원회관 1소회의실

[별첨1] 제405회국회(임사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산자중기위	일시	구분	내용
정무위	4/25(화) 10:0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행안위	4/25(화) 09: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 및 의결
	4/25(화) 산회후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농해수위	4/24(월) 14: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간사 선임 등
산자중기위	4/25(화) 09:20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	- 법안 심사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
복지위	4/24(월) 10:00	전체회의	- 청원 의결, 법안 상정 -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4/25(화) 14:00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 심사
	4/26(수) 09:3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4/27(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환노위	4/25(화)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 계획 보고
국토위	4/25(화) 10:00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4/26(수) 10:00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4/28(금) 10:00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여가위	4/25(화) 14: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부산엑스포특위	4/26(수) 10:00	전체회의	-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결과보고 -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
연금개혁특위	4/26(수) 14:00	전체회의	-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
인구위기특위	4/26(수) 14:00	전체회의	-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24(월) 14:00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	김희곤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4/25(화) 13:30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4/25(화) 14:00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최승재·김성주 의원실, 블록체인 포럼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4/25(화) 14:00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	최종윤·남인순·조명희· 김원이·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4/25(화) 15:00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	윤관석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4/26(수) 10:00	국회 해양수산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설훈·윤재갑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4/26(수) 14:00	챗GPT와 AI 혁신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의원회관 5간담회실
4/27(목) 10:00	과도한 공포가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와 대책 토론회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4/27(목) 10:00	제주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점검 회의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실
4/27(목) 13:30	치료 가능한 실명 질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서영석·정춘숙·신현영· 최종윤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4/27(목) 14:00	2050 탄소중립과 목조건축의 활성화	김정재·송석준·위성곤 의원실, 국토교통부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4/28(금) 10:00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	안병길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82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4/18(화) 10:30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Brad Smith) 초청 강연 - 미래를 열어가는 AI 기술, 그리고 책임과 윤리	국회방송 유튜브
국회도서관	4/19(수)	「금주의 서평」 제624호 발간 - 책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시대에 서점의 역사를 쓰다	
	4/19(수)	「World&Law」 제2023-8호 발간 - 학교폭력 멈춰!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예산정책처	4/20(목)	「NABO 경제 동향」 4월호 발간	
	4/21(금)	「2023 대한민국 조세」 발간	
	4/21(금)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발간	
입법조사처	4/17(월)	「이슈와 논점」 발간 -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17(월) 10:00	공공행정 AI 도입방안 모색 포럼	장철민 의원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의원회관 8간담회실
4/17(월) 10:00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재활용 토론회	김형동·전해철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4/17(월) 14:00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권철승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4/17(월) 14:00	북한의 군사전략과 핵·미사일 능력 분석과 평가	이인영 의원실, 국회 한반도경제전략 연구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
4/17(월) 14:00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방안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	김희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분과	의원회관 1소회의실
4/18(화) 09:30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김종민·윤두현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4/18(화) 14:00	국민연금 2040 넷제로 Net Zero 달성 방안 토론회	한정애 의원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의원회관 2소회의실

5. 지난 주(4/19~4/25)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4/19(월)	소송	<u>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제도 변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u>
4/20(화)	건설/부동산	<u>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u>
4/20(화)	조세	<u>‘무효사유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이후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할 수 없다’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u>
4/21(수)	금융	<u>가상자산(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 처분 사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u>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